

case
8

에어컨 실외기

요약

사례명	에어컨 실외기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
사례번호	NY N352477 (2025.08.29.)
사실관계	중국산 응축기, 압축기, 구리 튜브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산 부품을 태국으로 수입한 뒤, PCBA 및 여러 서브 어셈블리를 생산하고, 이를 최종 조립하여 에어컨 실외기 완성
쟁점 및 판정	<p>①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</p> <p>본 사안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산 부품들이 태국에서 서로 조립되어 실외기가 생산되나, 태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대체적으로 나사 체결, 볼트 체결, 용접 작업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공정에 해당하며, 이러한 공정은 난방 및 냉방 공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국산 부품(압축기, 응축기 등)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,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</p>
근거법령	-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(19 U.S.C. § 2411)

I 판정사례

사례명 [에어컨 실외기]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

사례번호 NY N352477 (2025.08.29.)

사실관계

요청자 Hisense USA Corporation

제품명 • 에어컨 실외기 (모델명: HD PRO, HD ULTRA, HD EDGE, HI UNI)

제품 구성 • 압축기, 응축기, 모터, 팬, PCBA, 밸브가 내장된 쇄시

용도 • 실내기와 결합하여 공간을 냉난방하는 시스템을 구성하도록 설계

제조공정



01

원재료 및 부품
캐나다로 수입



02

PCBA 및 각종 서브
어셈블리 생산



03

최종 조립



04

미국 수출

상세공정

1. 중국산 응축기, 압축기, 구리 튜브 등을 포함한 여러 국가산 부품을 태국으로 수입

2. 태국 제조 공정

(1) PCBA 생산

- 여러 국가산 부품을 사용해 태국에서 표면 실장, 납땜 공정 등을 수행

(2) 팬 서브 어셈블리 생산

- 여러 국가산 플라스틱 펠릿을 사용해 팬 허브와 블레이드 제작

- 팬 허브, 블레이드를 중국산 부식 및 베어링과 초음파 용접 및 열처리하여 결합

(3) 응축기 서브 어셈블리 생산

- 알루미늄 포일을 핀 형태로 성형 및 프레스 처리

- 중국산 구리 튜브를 절단하여 U자 형태로 굽힘

- U자형 튜브, 핀, 커넥터, 조인트 및 플러그 등을 중국산 응축기에 브레이징

- 응축기에 질소 충전 후 테스트 수행

(4) 압축기 서브 어셈블리 생산

- 중국산 압축기에 태국에서 생산된 금속 패널, 판, 브래킷 등 부착

(5) 최종 조립

- 나사 및 볼트 체결, 용접 등 비교적 단순한 공정 수행

3. 미국 수출

쟁점사항

- ✓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및 분석



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검토

- 『Section 301(b) of the Trade Act of 1974』에 따른 추가 관세의 적용 여부는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인지 아닌지에 따라 결정되며, 이는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의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
-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: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의 변화 여부

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HQ H301619 (2018.11.06.)*

❖ 참고 판례: *Texas Instruments v. United States, 681 F.2d 778, 782 (1982)*

❖ 참고 판례: *Nationa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, 16 C.I.T. 308 (1992), aff'd, 989 F.2d 1201 (Fed. Cir. 1993)*

판정 결과

- 본 사안의 경우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산 부품들이 태국에서 서로 조립되어 실외기가 생산되나, 태국에서의 조립 공정은 대체적으로 나사 체결, 볼트 체결, 용접 작업과 같은 비교적 단순한 공정에 해당하며, 이러한 공정은 난방 및 냉방 공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중국산 부품(압축기, 응축기 등)을 실질적으로 변형시키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,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중국임

결론

- ✓ 제301조 적용 목적의 원산지는 중국임

II 시사점

- 압축기, 응축기와 같이 최종 물품에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구성 요소를 수입한 뒤, 단순히 나사 체결, 볼트 체결, 용접 등과 같은 작업만이 수행된 경우, 실질적 변형을 인정받기 어려움

III 참고자료

- CBP Ruling NY N352477 (2025.08.29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52477>
- CBP Ruling HQ H301619 (2018.11.06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H301619>
- Section 301 of the Trade Act of 1974(19 U.S.C. § 2411), <https://uscode.house.gov/view.xhtml?req=granuleid:USC-prelim-title19-section2411&num=0&edition=prelim>

- Texas Instruments, Inc. v. United States (1982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8163/texas-instruments-inc-v-united-states/?q=Texas+Instruments%2C+Inc.+v.+United+States>
- Nationa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 (1993), 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737087/national-hand-tool-corp-v-united-states/?q=National+Hand+Tool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n